

●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심사단계	1차 심사	2차 심사
심사구분	서면심사 ※ 필요시 현장심사 진행	사전브리핑 및 본 심사
심사담당	1차 심사위원회 * 본원·지역본부·외부전문가 등	중앙심의위원회 * 복지부·개발원·외부전문가로 구성
주요내용	서류심사를 통한 사실관계, 사업내용 확인 등	비즈니스모델 및 재무건전성 등 검토 신청기관별 제안발표를 통한 최종선정

📌 선정기준

- 중앙심의위원회(1차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 평가),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
 - (1차심사)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 (2차심사)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
- 최종 심사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rdi.or.kr>)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서류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접수처	관할지역	주소	연락처
서강지역본부	서울, 강원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6 우남빌딩 7층	02)6203-0963
부울경지역본부	부산, 울산, 경남	(475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아이즈비전빌딩 3층	051)507-6375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경북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070)4736-7089
경인지역본부	경기, 인천	(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070)8858-8905
호남지역본부	광주, 전남, 전북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324 SRB 빌딩 6층	062)365-8817
제주지사	제주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64)805-3077
중부지역본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042)476-9892

성장지원 사업안내

📌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경영관리, 교육 등 지원서비스 제공

📌 주요 지원서비스

구분	컨설팅 분야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제품제작, 제품촬영, 웹페이지개발 등 디자인 개발과 제작지원
기술·인증	HACCP, ISO, KC 등 산업규격 인증지원(취득절차 정보제공, 절차서 개발 등 인증수행),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
판로개척	시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판매처 추가개발, 홍보채널 분석 등
국내외 온라인 마켓 진출지원	국내외 주요 온라인마켓 입점지원(국내, 해외) 및 홍보마케팅 지원(검색마케팅, SNS노출) 등
경영자문	기업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문 제공(세무, 회계, 법률, 노무 등)

📌 연락처 : 1644-5382

📌 홈페이지 : www.kordi.or.kr/growu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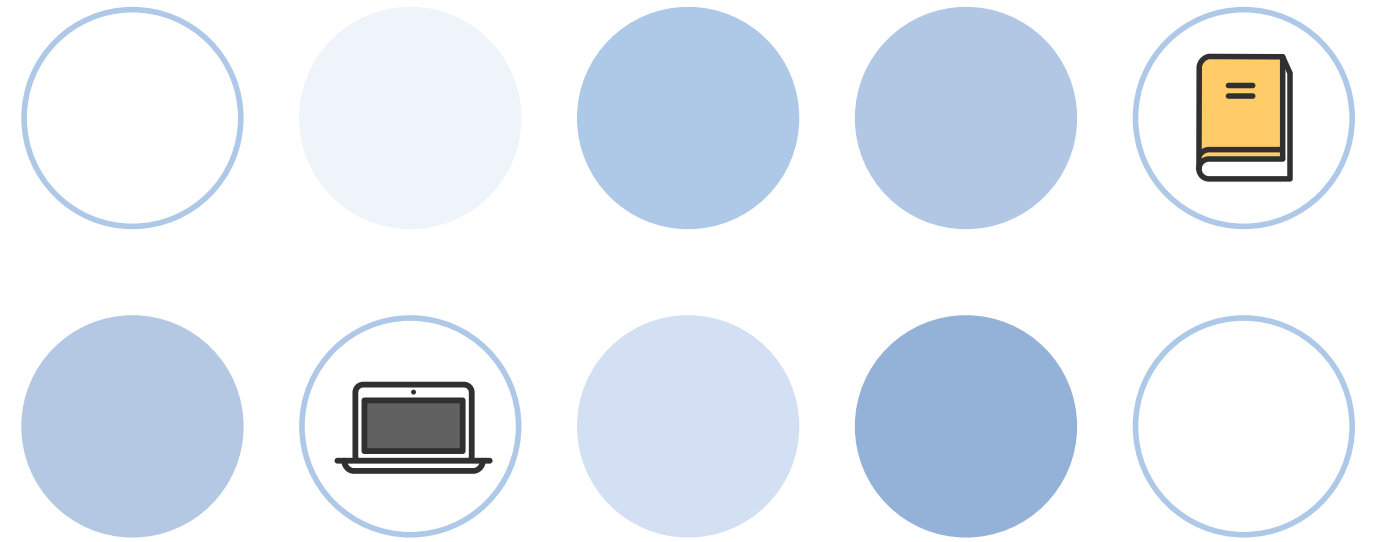
● 컨설팅 진행절차

📌 현장에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되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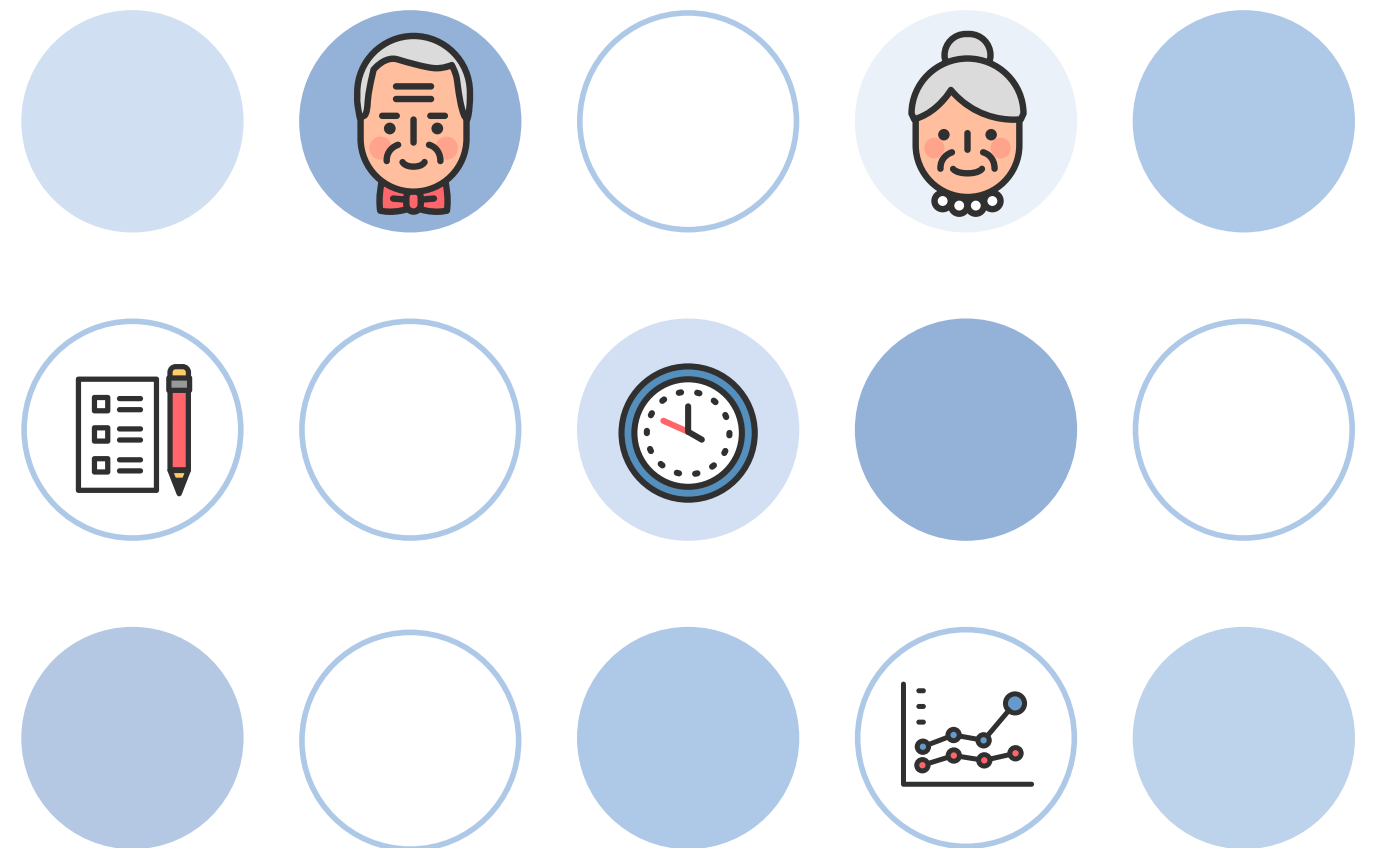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신고센터

신고접수 전국대표번호 1544-7730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고령화친화기업 사업안내

● 사업정의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 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 지원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 비율	지원규모
지정 기업인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없음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 × 5백만원 + 기본자금 1억 		
신규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신청금액의 70% 이상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형 사업단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 	없음	개소당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규모)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등 2억원 		
브릿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창업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 	없음	개소당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규모)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등 1억원 		
시니어직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기업 및 직능단체 	70% 이상 (직장형)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20% 이상 (직능형)	

● 지원방법·절차



●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유형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지역특화형		시니어직능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 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모기업(공고일 이전 설립된 법인)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고령자 적합 직종 기업을 신규로 설립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대응투자	면제	지원신청액 70% 이상	면제	면제	지원신청액 70% 이상(직장형), 지원신청액 20% 이상(직능형)
보조금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2억원	1억원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최소 고용인원	10명 ~ 20명	10명 ~ 20명	10명	5명	10명 ~ 20명
교부금액 산정	추가 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기본자금 1억	목표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2억원	1억원	목표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교부기간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60% → 20% → 20%)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60% → 20% → 20%)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60% → 20% → 20%)	지정년도 전액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60% → 20% → 20%)
지원항목	기본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기본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초기투자비 및 인건비 ※ 보조금의 20% 내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초기투자비 및 인건비 ※ 보조금의 10% 내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기본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고용목표 설정 (지정년도 제외)	1년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1년차 ~ 100%	1년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고용실적 인정기준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연간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공동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 시), 대응투자 이행계획서(해당 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건축서 등) 일체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 시)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 시)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1부 4대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 (접수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자 회원명부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유형별 추가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자 회원명부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설립형태	해당없음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성장지원	제품개발, 인증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경영지원 등 컨설팅 제공				
관리기간	지정년도 제외		5년 관리		
운영기간	연 2회 현장점검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이행보증 보험가입	보조금 교부금액		이행보증보험가입(관리기간)		